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5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 장경태·김민철·김승원

노웅래 • 류호정 • 민병덕

민형배 · 송재호 · 오영환

유정주・이규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 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의2).

법률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청년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창업자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4. "청년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
	<u>한다.</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청년창업자 지원에 관
	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
	<u>자를 우대할 수 있다.</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
	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
	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